탄 원 서

피고인	김진우
사건번호	2025고합1733
관련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회사 자금 관련 혐의, 증거은닉 등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김진우 피고인에게 제기된 의혹은 개발부담금 산정자료의 작성·정정과 관련한 문제, 회사의 급여 및 법인카드 지출, 그리고 이우환 화백 작품의 보관·이동에 관한 증거은닉 문제로 나뉩니다. 각 사안의 중대성은 분명하며, 일부 관련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되거나 항소심에서 선고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리한 자료를 외면한 채 무죄만을 외치기보다, 실제로 무엇이 확정되었고 무엇이 아직 김진우 피고인에 관하여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를 구별해 달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씁니다.

피고인이 시행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정은 회사 자료의 작성과 제출 과정에 관한 중요한 조사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표 또는 실질 운영자로서의 책임과 형사법상 개별 행위의 인식·고의가 언제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운영자라는 지위 때문에 구체적 문서와 지시를 확인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양쪽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증거를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의 시작에서 자료의 작성자와 피고인의 인식 시점을 살펴 주십시오

양평군의회 공식 회의록에는 납부의무자 대한토지신탁이 2016년 최초 예정통지 이후 두 차례 고지전 심사청구를 했다고 설명됩니다. 처음에는 매입가액·종료시점 평가액·일부 공사비가, 이후에는 종료시점 가격과 사업개시일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피고인 또는 시행사 관계자가 그러한 신청에 관여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했고 특정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 토지 취득가격과 공사비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은 적법한 절차일 수 있지만, 사실과 다른 가격이나 물량을 알면서 그 수치를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최초 산정서의 작성자, 현장 확인자, 검토기관의 보완 요청, 최종 서류의 서명·결재와 피고인에게 보고된 문구를 시간순으로 보아 주십시오. 자료가 나중에 틀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유력한 검토 대상이지만, 그 틀린 사실을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큰 금액의 오류를 지적한 법정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증명 범위는 구별해 주십시오

2026년 4월 20일 공판 보도에 따르면 외부 검토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시한 개발비용 약 134억 원을 약 90억 원으로 재산정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 질문에서는 토사 운반거리 3km와 18.5km의 차이가 제시되었고 관련 비용 약 45억 원과 약 14억 원을 비교하는 내용도 다루어졌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는 회사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엄격히 검증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각 증언은 서로 다른 대상을 밝힙니다. 실제 운반한 거리가 몇 킬로미터였는지, 회사가 제출한 최초 계산에 어떤 거리와 물량이 쓰였는지, 외부 검토에서 무엇이 정정됐는지, 담당 공무원이 최종 심사에 어느 수치를 채택했는지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더욱이 증인이 직접 확인한 측량·검토 사실과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3km와 18.5km 비교는 검찰 질문으로 제시됐다는 점도 이러한 구별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설령 자료의 일부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김진우 피고인이 작성·제출을 지시했는지, 허위라고 통지받고도 고집했는지, 잘못된 수치가 최종 부담금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결재·메시지·회의기록이 있다면 그 증명력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의 이득액과 회사 자금의 지출은 독립된 범죄사실입니다

검찰은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약 22억 원의 이익을 주장하지만, 양평군의회의 최초 예정액·중간 조정액·미부과·정정부과액은 각기 다른 계산과 법적 시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단순 합산해 이득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도5220 판결에 따라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은 법률상 산정방법과 객관적 자료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득액 산정에 의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 배임죄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공소사실의 각 층위를 분리해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사 자금 관련해서는 약 2억 4,300만 원의 급여와 약 594만 원의 법인카드 사용이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근로계약과 업무가 있었는지, 지급액이 업무의 대가로 적정한지, 김진우 피고인이 지급이나 카드 사용을 구체적으로 지시·승인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책만으로 모든 지출의 형사상 고의를 추정해서도 안 되지만, 대표가 직접 승인하거나 사적 용도로 지출하도록 했다는 문서가 있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개발부담금에서 문제 되는 재산상 이익과 회사 자금 지출에서 문제 되는 피해 재산의 주체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혐의에 대한 의심이 다른 혐의의 빠진 증거를 채워서는 안 되며,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한 혐의의 증명 정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우환 그림에 관한 관련 판결을 인정하는 것에서 사실관계 심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서는 2026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2026년 9월 22일 김건희 씨의 별도 항소심에서도 그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출처와 제공 경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김상민 전 검사, 후자는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이고, 9월의 판단은 그 당시 항소심 선고로서 별도 상고 가능성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개된 사진과 보도에는 2024년 11월 무렵 김진우 피고인의 주거지에 그림이 걸려 있었다는 내용, 이후 2025년 7월 무렵 장모의 주거지로 이동했다는 의혹이 등장합니다. 이동 자체와 그 이후 발견 경위는 중요한 객관적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은닉죄를 판단하려면 그 그림이 누구의 형사사건과 관련되는 물건인지, 이동 당시 피고인이 그 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합니다.

증거은닉죄는 반드시 수사가 시작된 뒤의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개시 전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보관 장소 변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증거은닉에 관한 인식과 고의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 주십시오.

자기 사건의 증거와 친족을 위한 행위는 서로 다른 법률문제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문제 되는 것은 해당 그림이 김상민 전 검사의 사건, 김건희 씨의 사건 또는 다른 사건 가운데 어떤 형사사건의 증거인지입니다. 여러 사건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사건의 존재만으로 다른 법률쟁점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년 1월 15일 선고 2024도15728 판결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자기 이익을 위해 없앤 행위가 동시에 공범자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친족 특례와는 별도의 자기 사건 법리입니다. 김진우 피고인이 그림의 이동 당시 그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때문에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이 법리를 사실상 면책 사유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친족 특례에 관해서도 김진우 피고인이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관계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직접적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그 목적과 그림의 증거성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김상민 전 검사에 관한 판결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심리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다른 친족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 법률상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특례가 반드시 적용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는 법률적 가능성을 요건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서로 다른 의혹을 하나의 확신으로 합치지 말아 주십시오

재판장님, 개발비용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증언과 이우환 그림 관련 유죄판결이 존재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련 판결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가 이 사건의 각 공소사실에 어떤 부분까지 증명력을 가지는지를 구분할 때 비로소 엄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김진우 피고인이 직접 관여하고 고의로 행한 범죄가 증명된다면 그 책임은 그 범위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반대로 개발비용 산정자료의 허위 인식, 회사 돈의 지출 의사, 증거은닉의 고의 가운데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 부분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원칙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친족 특례 또는 자기 사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정이 실제로 인정된다면 각각의 요건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결론을 미리 정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한 사람을 판단하는 법적 과정에 생략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탄원입니다.

2026년 _____월 _____일

탄원인 성명: _____ (본인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_____ 연락처: _____

주소: _____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귀중